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03 17(화) 평창군수(산림과장)

나. 회부일자 : 2015. 04. 14(화)

다. 상정일자 : 2015. 04. 20(월) 제2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산림과장 천장호)

가. 휴양림 명칭이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에서 “평창자연휴양림”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간단·명료하게 개칭하여 업무능률 향상 도모

나. 시설사용료 요금수준을 인근 펜션, 국립휴양림, 도내 지방자치단체 자체 휴양림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현실화와 군민·단체이용객에 대한 할인율과 성수기 기간을 현실성 있도록 개정하여 경쟁력 확보

다.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정, 빈번한 임의 예약취소 등에 따른 재정손실 해소와 선의의 이용자들에게 대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명 변경과 시설사용료 요금의 현실화, 군민 및 단체이용객에 대한 할인율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마련, 예약 취소에 따른 재정손실 해소 등 이용자들의 시설사용 편의와 시설 관리 운영규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개선 함으로서, 시설 이용율은 보다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수정 주요골자

- 조례 제7조제3항의 “비수기에는 별표2호의”를 “별표2호”의로
- 조례 제7조제3항 별표2호의 6호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요금을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에게 “주말·휴일·성수기는 20%”로 “비수기는 주중 30%”로 수정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13세 이상 18세”를 “만13세 이상 만18세”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른”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호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자로부터”를 각각 “사람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사용자”를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이용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 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다목적운동장 이용객

2. 숙박시설 이용객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별표2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해서는 휴양림입장을 제한”을 “사람은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 방지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제8조제2항제2호 중 “거부하는 자”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반한 자”를 “동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가”를 “이용객이”로 한다.

제9조 중 “자에대해”를 “사람에 대해”로 한다.

제10조 중 “이용자가”를 “이용객이”로, “휴양시설또는”를 “휴양시설 또는”으로 한다.

별표 1부터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개 인			단 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요금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할인요금	1,000	800	500	800	500	300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주차료	경차	1,500	2,000	2,0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2,000	3,000	3,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3,000	4,000	4,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4,000	5,000	5,000	
야영장		10,000	10,000	10,000	1조/1일
산림문화 휴양관	강당 184㎡	70,000	100,000	10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세미나실 27㎡	30,000	40,000	50,000	1일/1실
숙박시설		60,000	80,000	100,000	1일/1실
다목적 운동장	1시간	15,000	20,000	20,000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3. 성수기는 매년 7. 15 ~ 8. 24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추가징수
5.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독립형 : 4인
 - 숲속체험관 : 4~6인 (성인4, 청소년이하 2)

6.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	1.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2.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 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7. 침구는 4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8. 야영시설만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제12조 관련)

가. 입장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나. 주차장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5시간 이내	5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다. 숙박시설 및 산림휴양문화관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내 용	환불기준	비 고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p>○ 성수기</p> <table border="1" data-bbox="343 376 1121 701"> <tr> <td>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td> <td>전액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9~7일전에 취소</td> <td>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6~5일전에 취소</td> <td>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4~3일전에 취소</td> <td>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당일 오전 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 이 미입실</td> <td>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td> </tr> </table>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9~7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6~5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4~3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당일 오전 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 이 미입실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약당일 24:00까지 (사용일 전날 예약시 2시간이내) 결제하여야 함. •환불시 카드수수료, 전자이체수수료를 공제함 <p>※위약금 미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9~7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6~5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4~3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당일 오전 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 이 미입실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p>○ 비수기</p> <table border="1" data-bbox="343 761 1121 1003"> <tr> <td>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td> <td>전액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td> <td>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td> <td>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td> </tr> </table>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업자과실 인 경우	<p>○ 성수기</p> <table border="1" data-bbox="343 1064 1121 1366"> <tr> <td>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td> <td>전액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5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td> <td>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td> </tr> </table>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5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	<p>객실 사용불가를 사전에 안내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p> <p>단,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일 경우 예약금만 전액 환불함</p>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5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										
	<p>○ 비수기</p> <table border="1" data-bbox="343 1426 1121 1653"> <tr> <td>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td> <td>전액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당일 통보</td> <td>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able>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하여 취소하는 경우	<p>예약금 전액 환불</p> <p>※ 객실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p>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별표 4] 그린카드 사용자 시설이용 관리대장(제7조제1항 관련)

이용일시	성 명	카드번호(앞 12자리)	비 고